

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		
제 3 부.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결산 업데이트	(생략)	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제 4 부.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	(생략)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라. 운용자산규모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
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

1. 집합투자기구명: 베어링 코리아 셀렉트 증권투자신탁(주식)
2. 정정대상 서류: 간이투자설명서
3. 정정사유:
 - 결산 업데이트
4. 정정사항: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투자비용	결산 업데이트	생략	투자비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 (연평균 수익률)	결산 업데이트	생략	연평균 수익률 및 수익률 변동성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운용전문 인력	결산 업데이트	생략	운용현황,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및 운용 경력년수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
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		
제 2 부. 별첨 1. 모집 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서식 변경	(생략)	(삭제)
제 3 부. 집합투자기 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결산 업데이트	(생략)	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제 4 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	(생략)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라. 운용자산규모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
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

1. 집합투자기구명: 베어링 고배당 40 플러스 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

2. 정정대상 서류: 간이투자설명서

3. 정정사유:

- 결산 업데이트

4. 정정사항: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투자비용	결산 업데이트	(생략)	총보수·비용, 동종유형 총보수 및 1,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 보수·비용 예시 결산일 기준 최근 자료 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 [연평균 수익률]	결산 업데이트	(생략)	연평균 수익률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결산 업데이트	(생략)	운용현황,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, 및 운용 경력년수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
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

1. 집합투자기구명: 베어링 국공채 증권투자신탁(채권)
2. 정정대상 서류: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
3. 정정사유:
 - 결산 업데이트
4. 정정사항: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2 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연혁 업데이트	(생략)	연혁 추가
제 2 부.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결산업데이트	(생략)	운용현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제 2 부.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업데이트	수익률 변동성 <u>0.88%</u>	수익률 변동성 <u>1.71%</u>
제 2 부. 13.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(보수 및 비용 표 하단 주석 문구 보완)	주 1)~주 2) (생략) (추가) (이하 생략)	주 1)~주 2) (현행과 같음) 주 3) 일반적으로 증권거래비용은 유가증권 매매수수료, 거래비용, 지급수수료 등을,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을 의미합니다. 직전 회계연도 기준의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 (직전 회계연도: <u>2022.01.01 ~ 2022.12.31</u>) 증권거래비용: 113 천원 / 금융비용: 해당사항 없음 (이하 현행과 같음)
제 2 부. 13. 나. 집합투자기구에	결산 업데이트	(생략)	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
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		
제 2 부. 별첨 1. 모집 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서식 변경	(생략)	(삭제)
제 3 부. 집합투자기 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결산 업데이트	(생략)	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제 4 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	(생략)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라. 운용자산규모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
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

1. 집합투자기구명: 베어링 국공채 증권투자신탁(채권)
2. 정정대상 서류: 간이투자설명서
3. 정정사유:
 - 결산 업데이트
4. 정정사항: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투자비용	결산 업데이트	생략	총보수·비용, 동종유형 총보수 및 1,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 보수·비용 예시 결산일 기준 최근 자료 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 (연평균 수익률)	결산 업데이트	생략	연평균 수익률 및 수익률 변동성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운용전문 인력	결산 업데이트	생략	운용현황,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및 운용 경력년수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
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

[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]

1. 집합투자기구명: 베어링 퇴직연금 배당 4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
2. 정정대상 서류: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
3. 정정사유:
 - 클래스 추가 (Class S-R)
 -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 반영
4. 정정사항: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3 조 (집합투자기구 의 명칭 및 종류)	클래스 추가	④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3. (생략) (추가)	④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3. (현행과 같음) 4. Class S-R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(겸영 금융 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계좌,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발행되는 수익증권
제 10 조(수익 증권의 발행 및 예탁)	클래스 추가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~3. (생략) (추가)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~3. (현행과 같음) 4. Class S-R 수익증권
제 39 조(보수)	클래스 추가	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	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		<p>1.~3. (생략) (추가)</p>	<p>1.~3. (현행과 같음) 4. Class S-R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3.5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1.5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0.14</p>
<p>제 44 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p>	<p>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 반영</p>	<p>① <u>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u></p> <p>②~③ (생략)</p> <p>④ (추가)</p> <p>⑤ (추가)</p>	<p>①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</u></p> <p>1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</p> <p>2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별도 보상을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보상 금액: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* 제 2 호의 대상 기간 일수 * 제 39 조제 3 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</p> <p>2. 대상 기간: 변경일로부터 6 개월간. 단, 남은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.</p> <p>3. 지급방법: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</p> <p>⑤ <u>제 4 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으로 인해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제 4 항 외 별도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(법 190 조제 3 항에 따른</u></p>

			<u>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한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)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u>
--	--	--	---

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

1. 집합투자기구명: 베어링 퇴직연금 배당 40 증권 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

2. 정정대상 서류: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

3. 정정사유:

- 결산업데이트
- 클래스추가 (Class S-R) 및 클래스 한글 명칭 명확화

4. 정정사항: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1 부.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	클래스 한글명칭 명확화	투자신탁의 명칭 (종류) : 베어링 퇴직연금 배당40 증권 자투자신탁1호 (채권혼합)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형(C) 수수료미징구-온라인형(Ce)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형(F)	투자신탁의 명칭 (종류) : 베어링 퇴직연금 배당40 증권 자투자신탁1호 (채권혼합)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형(C)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형(Ce)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, 퇴직연금형(F)
제 1 부.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	클래스 추가	투자신탁의 명칭 (종류) : 베어링 퇴직연금 배당40 증권 자투자신탁1호 (채권혼합) (클래스 추가)	투자신탁의 명칭 (종류) : 베어링 퇴직연금 배당40 증권 자투자신탁1호 (채권혼합)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형(S-R)
제 1 부.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	클래스 한글명칭 명확화	투자신탁의 명칭 (종류) : 베어링 퇴직연금 배당40 증권 자투자신탁1호 (채권혼합)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형(C) 수수료미징구-온라인형(Ce)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형(F)	투자신탁의 명칭 (종류) : 베어링 퇴직연금 배당40 증권 자투자신탁1호 (채권혼합)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형(C)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형(Ce)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, 퇴직연금형(F)
제 2 부.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	클래스 추가	투자신탁의 명칭 (종류) : 베어링 퇴직연금 배당40 증권 자투자신탁1호 (채권혼합) (클래스 추가)	투자신탁의 명칭 (종류) : 베어링 퇴직연금 배당40 증권 자투자신탁1호 (채권혼합)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형(S-R)

제 2 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연혁 업데이트	(생략)	연혁 추가
제 2 부.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결산업데이트	(생략)	운용현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제 2 부.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. 종류형 구조	클래스 추가	[수익증권 종류별 특징] (추가)	[수익증권 종류별 특징] 온라인슈퍼(S)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제 2 부.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업데이트	수익률 변동성 <u>7.36%</u>	수익률 변동성 <u>7.65%</u>
제 2 부. 11. 가. 매입	클래스 한글명칭 명확화	1) (생략) 2)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형(C) 수수료미징구-온라인형(Ce)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형(F)	1) (현행과 같음) 2)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형(C)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형(Ce)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, 퇴직연금형(F)
제 2 부. 11. 가. 매입	클래스 추가	1) (생략) 2) 종류별 가입자격 (추가)	1) (현행과 같음) 2)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형(S-R)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 금융 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사용자 및 가입자
제 2 부. 13. 보수 및	클래스 한글명칭 명확화	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 되는 수수료	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 되는 수수료

<p>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		<p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형(C) 수수료미징구-온라인형(Ce)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형(F) (생략)</p> 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형(C) 수수료미징구-온라인형(Ce)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형(F) (생략)</p> <p>*1,0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형(C) 수수료미징구-온라인형(Ce)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형(F) (생략)</p>	<p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형(C)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형(Ce)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, 퇴직연금형(F)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형(C)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형(Ce)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, 퇴직연금형(F) (현행과 같음)</p> <p>*1,0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형(C)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형(Ce)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, 퇴직연금형(F)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 2 부.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	<p>클래스 추가</p>	<p>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 되는 수수료 (추가)</p> 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추가)</p> <p>*1,0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 (추가)</p>	<p>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 되는 수수료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형(S-R) 신취/후취 판매수수료 : 없음 환매수수료 : 없음 전환수수료 : 없음</p> 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형(S-R) -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3500% -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1500% -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300% -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140% - 총보수비용 : 0.4090%</p> <p>*1,0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 클래스 추가 (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형(S-R))</p>
<p>제 2 부.13.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</p>	<p>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(보수 및 비용 표 하단 주석 문구 보완)</p>	<p>주 1)~주 3) (생략) (추가)</p>	<p>주 1)~주 3) (현행과 같음) 주 4) 일반적으로 증권거래비용은 유가증권 매매수수료, 거래비용, 지급수수료 등을,</p>

비용		(이하 생략)	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을 의미합니다. 직전 회계연도 기준의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 (직전 회계연도: 2022.01.01 ~ 2022.12.31) 증권거래비용: 18,267 천원 / 금융비용: 해당사항 없음 (이하 현행과 같음)
제 2 부.13.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결산 업데이트	(생략)	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제 3 부.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결산 업데이트	(생략)	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제 4 부.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	(생략)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라. 운용자산규모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
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

1. 집합투자기구명: 베어링 퇴직연금 배당 4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

2. 정정대상 서류: 간이투자설명서

3. 정정사유:
- 결산 업데이트
 - 클래스 추가

4. 정정사항: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1 부.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	클래스 한글명칭 명확화	클래스 종류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형(C) 수수료미징구-온라인형(Ce)	클래스 종류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형(C)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형(Ce)
투자비용	결산 업데이트	생략	총보수·비용, 동종유형 총보수 및 1,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 보수·비용 예시 결산일 기준 최근 자료 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 (연평균 수익률)	결산 업데이트	생략	연평균 수익률 및 수익률 변동성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운용전문 인력	결산 업데이트	생략	운용현황,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및 운용 경력년수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집합투자기구의 종류	클래스 추가	집합투자기구의 특징 (추가)	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온라인슈퍼(S)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

			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--	--	--	----------------